

# 시·론



이 만 구

요즈음 국가보안법을 廢止할 것인가? 改正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둘 것인가를 놓고 政治圈은 勿論 법조계 시민단체들의 關心과 論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필자는 국가보안법의 개폐 여부를 떠나서 이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갈등을 심화시키면서까지 꼭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먼저 의견을 제기하고 싶다.

우리 국민 대다수는 지금 절박한 민생문제, 도산 위기에 직면해있는 중소기업과 대수입업체 불안한 경제문제, 쌀 개방과 관련된 농민사위문제를 비롯한 노사문제, 국제적으로는 미군 재배치 문제, 북핵문제 등 당면 현안 사안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을 강구해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지금의 경제상황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과연 우리 국민 대다수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가? 누구나 입만 열면 IMF때보다도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아우성인데 정부당국자는 과연 다수 국민들의 이 절규를 아는가? 모르는가?

논란이 되고 있는 國家保安法 문제 가 있다면 고치고 또 필요 없는 상황이 되면 폐지 할 수도 있다.

필자는 법률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깊이 접근하기는 어려우나, 그러나 8.15 해방이후 사중의 대립과 지하남로당일파의 준동으로 혼란이 극에 달했던 격동의 시기를 겪었고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를 체험하면서 북한의 악랄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대로서 지금 이 시기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우리의 안보는 어찌되는 것인지 걱정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다.

물론, 1948년 국가보안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 일부 인권탄압과 정권안보의 도구로 악용됐던 점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나 그 후 이러한 오남용의 소지를 없애고자 1980년 전문 개정 후에도 다섯 차례나 개정을 거듭, 국가안보에 기여해 온 이 법을 한

시대의 아픈 역기능만을 적시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제도적 장치인 이 법의 순기능을 무시하고 아예 법 자체를 폐지하자는 주장에 대하여는 얼른 공감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정말 이 법을 폐지해도 국가 안보에 별 이상이 없는지 불안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국가이다.

우리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라고 되어 있음에도 한반도에는 엄연히 또 하나의 국가 내지는 정부가 상존하고 있다. 그 하나의 정권은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사회주의 대남적화통

또한 그 동안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판결에서도 국보법 자체의 필요성을 계속 인정해 왔다는 점에서 이런 판결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나 어찌 보면 이번 판결은 법률적 판단 수준을 넘어 정치권에 강한 우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이다.

또 대법원은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없거나 형법상의 내란죄나 간첩죄 등의 규정만으로도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국보법의 규범력을 소멸시키거나 북한을 반국가단체에서 제외하는 등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

## 國家保安法 改廢 論議는 安保守선의 대승적 자세로

일 노선을 견지하면서 호시탐탐 기회만을 엿보고 있는 북한 정권이다.

남북은 냉전의 시기에서 벗어나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의 길을 함께 걷고 있는 화면도 있으나 한편 155마일의 휴전선에서는 24시간 일촉즉발의 위기가 감도는 종전이 아닌 휴전상태로 대치하고 있음을 우리는 한시도 잊을 수 없다.

여기서 國保法 개폐 논의의 중요한 초점의 하나는 북한을 화해협력의 동반자로 볼 것인가? 아니면 반국가 단체로 볼 것인가 하는 견해와 판단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다.

물론 현재의 상황에서 북한의 지위는 남북 교류 협력 법에서 화해협력의 동반자관계와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 단체라는 이중적 성격을 함께 갖고 있다 하겠으나 이점에 대해서는 며칠 전 대법원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보기에 아직은 시기상조임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남북한 사이에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평화와 화해를 위한 획기적인 등기가 마련되고 있다 하더라도 북한이 여전히 우리나라와 대치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 노선을 포기했다"는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는 만큼 북한이 반국가 단체성이 사라졌다거나 국가 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라고 판시하면서 북한을 아직 화해협력의 동반자로만 보기에 시기상조임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기되고 있다."고 국보법 폐지론에 강력한 경종을 울리는 한편, 북한이 50여 년 전 적화통일을 위해 무력침략을 강행해 민족적 재앙을 일으켰고 오늘에 이르기 까지 수많은 도발과 위협을 계속해 오고 있는 사실을 상기 시키면서 앞으로 "북한이 온갖 방법으로 우리의 체제전복을 시도할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다"고 지적하고 그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을 강력 시사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도 수차례 결정한 국보법의 위헌제정신청에서 "국보법이 확대해석의 위험이 없을 뿐 아니라 문제가 있다면 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운용상의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음을 우리는 마음 깊이 새겨 두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약 국보법이 폐지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일당의 친북세력들이 서울 시청 앞이나 광화문 네거리에서 인공기를 흔들며 북한의 주체사상과 사회주의 이념을 찬양·선전하는 행위를 자행한다면 이를 무슨 법으로 어떻게 제재를 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최근 경찰청 발표에 의하면 현재 인터넷에서 활동 중인 친북 사이트가 43개나 된다고 한다.

많은 법률학자들은 평화시대를 기조로 제정된 형법의 내란죄, 간첩죄 등의 규정만으로는 남북대치의 특수한 상황에서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을 위한 선전 특히 사상전술에 대처하여 국가의 안전을 지키기엔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

고 있다. 따라서 국보법은 형법상 내란죄 등 규정의 존재와는 별도로 독자적 존재의 의의가 있음을 우리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안보의 위협과 어려움이 따르는 국보법 개폐 문제를 놓고 소모적 논쟁에 온 나라가 술렁이며 국력을 낭비한다면 가장 좋아할 사람이 과연 누구이겠는가? 아마도 북한의 김정일정권과 그 추종세력들임은 너무도 확연한 사실이다. 만약 북한이 남북협상의 전제조건으로 한동안 잠잠했던 국보법폐지라는 카드를 공식적으로 들고 나온다면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따라서 이론제로 인한 여야 정치권의 격렬한 투쟁과 사회적 갈등 등의 심화는 그 자체로도 북에게 우리의 허점과 새로운 발목을 잡을 수도 있음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국보법 폐지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여러 가지 이유 중 가장 중요한 이유로 선진국에 걸맞은 인권의 보장을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모한 것은 과거에는 주로 피해를 받을 개연성이 있는 힘없는 쪽에서 국보법의 개폐를 주장해 왔으나 이번에는 이 법을 운용하는 입장에 있는 여권에서 오히려 폐지를 주장하면서 또한 기어코 관철하겠다는 뜻으로 비춰지는 점이라 하겠다.

바라건대 정치권은 이렇듯 중요한 인권과 국권이 걸린 국가안보의 문제를 당리당략차원으로 끌고 가지는 말아주었으면 한다.

어떠한 결정을 이미 당론으로 결정해놓고 무슨 대화나 여론수렴이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점에 유의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최고의 가치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라는 점을 간과하지 말았으면 한다.

아무리 인권이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라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 자체를 전복하려는 자유까지 허용해 줄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체제 수호를 위해서는 허용과 관용에도 한계가 있어야 함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이다.

한 나라의 체제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것이므로 국가의 안보에는 한 치의 허술함이나 안이한 판단은 절대 금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부디 여야 정치권이나 입법부에서는 사법부의 판단과 여론을 겸허하게 수렴하여 보다 현명하고 대승적인 자세로 신중히 대처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마지 않는다.

<포천문화원장>

## 자유기고 '프리즘으로 본 한국' -① 귀국 선물



박 석 호  
갈월중학교 근무

어렵듯이 싸움소리가 귀에 들려왔다. 잠이 덜 깬 상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싶어 멍한 상태로 천장을 보고 누워있으니, 다투는 소리가 분명하게 한국말이어서 순간적으로 정신이 번쩍들어 나의 잠자리를 살펴보니 평소 내가 자던 침대가 아닌 것을 깨닫고 "음~, 어제 내가 한국에 돌아 왔었지"라는 생각이 떠올라 눈을 크게 뜨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깥 불빛에 비쳐진 방안을 둘러 보면서 고국에 돌아와 방을 얻어 첫 밤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곧바로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고, 무슨 일로 싸우나 보려고 바깥을 살펴보니 승용차끼리 접촉사고를 내어 도로 중앙의 일차선에 자동차를 세워 둔 채 두 사람이 서로 사대질을 하며 다투는 걸 보면서 "누가 잘못했건데 왜 이렇게 큰 소리로 싸우지, 사고 났으면 조용히 갖길로 차를 옮기고 서로 인적사항을 교환하고 나중에 해결하면서 되는데"라고 생각하는 사이 두 대의 경찰차가 도착했다.

경찰이 차에서 내려 다투고 있는 두 사람을 제지하면서 귀에 들리지 않았으나 인적 사항과 사고난 경위를 물어보는 것 같았는데, 조사를 받는 중에도 큰 소리로 서로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우기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래서 경찰도 화가 났는지 뭐라고 큰 소리로 나무라자 싸우던 두 운전자가 도로 중앙에 세워둔 자동차를 갖길 차선으로 옮기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다행히 한 발중이라 운행하는 자동차가 뜰해서 땅

정이지 한 낮이라면 꽤 교통체증이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이 자동차를 옮기지 않고 세워두고 있는 사이에 일차선으로 달리던 차량들이 줄지어 천천히 비껴가고 있는데도 말싸움만 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무례한 행동들인가?

사고차량이 갖길 차선으로 옮겨진 후부터 차량소통이 원활해지고 경찰은 조사가 끝났는지 두 대의 경찰차에 오르면서 사고 차 운전자 각 자가 자기 자동차를 운전하고 떠나는 걸 보고서야 경찰차도 가 버렸다.

이렇게 정리가 끝나고 나서야 주변이 조용해 졌고, 2월의 차가운 바람이 몸에 스며들어 약간 몸이 떨리는 추위를 느껴 창문을 닫고 다시 침대에 누우면서 시계를 보니 새벽 한시였다.

그 사이에 나의 잠은 완전히 깨어 버린지라 눈을 팅팡거리며 방금 일어난 자동차 사고를 떠올리며, 거의 이십년 가까이 살았던 호주 시드니에서의 자동차 사고를 생각했다.

그곳에서는 자동차 사고가 나면 곧 경찰에 연락하고, 물의 합의하에 다른 사람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갖길 차선으로 자동차를 옮긴 후 서로 운전 면허증을 교환해 면허 번호와 주소, 전화번호 등을 교환하고, 어느 보험회사에 가입했는지 확인한 후 마지막으로 부딪힌 사고 현장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사진 촬영을 하고 상대방에게 확인 사인을 받은 다음 조용히 헤어지는데, 고국에 와 보니 처음 목격한 일인건 하지만 사고가 나면 우선 서로의 인적사항을 교환하기 전에 팔부터 걷어 올리고 큰 소리로 싸움을 시작해 상대방을 제압 시키려고 기 싸움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아직도 우리나라는 후진국에서 벗어 나지 못했다 아니냐는 생각이 들면서 화풀이를 하는지 할 수는 없지만, 서울에 온 첫 날부터 싸움소리에 잠을 깰 정도로 "사람들 성질이 아주 고약하구나, 옛날에 살 때는 잘 몰랐었는데, 조심하면서 살아야지"하는 마음이 들었다.

이렇게 고국에서의 첫 밤의 싸움소리가 나의 귀국을 환영하는 선물이라고 생각하며 긴 여행 뒤끝이라 아직도 물에 적신 솜처럼 무겁고 피곤한 몸을 풀려고 다시 잠을 청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나 자라고 결혼해 아이들을 키우며 호주로 떠나 17년간의 생활을 하고 고국으로 돌아온 박석호씨는 현재 갈월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다.

박 씨가 고국을 떠난 후 17년간의 호주생활을 정리하고 돌아와 생활하면서 한국사회를 다시 바라본 것을 글로 정리했다.

본지는 필자의 소중한 원고를 지면에 게재해 널리 알림으로써 우리사회의 잘못된 습관을 바로 잡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10회에 걸쳐 연재기로 한다.

필자 박석호씨는 한양대 산업대학원 전기과를 나와 지난 85년부터 2003년까지 AERENA, SH PARK HOLDING, Australia 대표로 근무했으며 2남1녀를 훌륭하게 교육시켜 장녀는 시드니대 졸업하고 변호사로 NSW주 법무부에 근무하고 있다. 장남은 시드니대를 졸업한 후 치과병원장으로 재직중이며 차남은 시드니대를 졸업하고 변호사로서 S.M 로펌 Senior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편집자주)

# 모발의 혁신 퍼 슨 코리아(주)

의정부점 <open>

"여러분에게 편안함을 드립니다"

## PERSON KOREA

취침, 운동, 사우나 OK!!

### 퍼 슨 심는가발맞춤점

대표: 1544-5868 본사: 02)3143-6474-6

- 고객만을 위한 1:1 상담, 시술
- 양질 100% 인모 심는 가발
- 다양한 여름 신제품
- 오랜경력의 스타일링
- 전국지점망 A/S
- 타사제품 관리, 수리

의정부시 의정부1동 153-1 / 전국 대표: 1544-5868 / 문의: 031) 848-6476 / 지점장: 김 나 영 www.personhair.co.kr